

공익 옹호관 Betsy Gotbaum 및 뉴욕이민자 연맹

이민자를 위한 공공혜택 안내서



뉴욕시
공익 옹호관
Betsy Gotbaum



뉴욕시 공익 옹호관 사무실의 웹사이트 www.pubadvocate.nyc.gov를 방문하시거나 212-669-7250로 전화 문의해 주십시오.
NYIC www.thenyic.org로 NYIC를 방문해 주십시오, 212-627-2227

뉴욕시 공익 옹호관 사무실

Betsy Gotbaum
뉴욕시 공익 옹호관

작성자:

Daniel Browne
정책 및 연구 국장

Mark Woltman
정책 및 연구 부국장

Laurel Tumarkin
선임 정책 고문인

Susie A. Han
정책 연구

보조관:

Kristina Mazzocchi
정책 및 법률 분석 보조관

Molly Coe, Brooks Fraser, Chloe Mentar, 및 Gabriel Pedreira
정책 인턴

다음 분들께 감사를 포함합니다:

Barbara Weiner, Esq.
엠파이어 스테이트 사법 센터 (*Empire State Justice Center*)

Jennifer Shaffer, Susannah Pasquantonio, 및 Tiffany Williams
교육 및 커리어 향상을 위한 여성센터 (*Women's Center for Education Career Advancement*)

Thomas Shea, Esq.
뉴욕 이민자 연맹 (*The 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Elizabeth Reichard, Esq., Fragomen Fellow
시 변호사 시험 사법 센터 (*City Bar Justice Center*)



뉴욕시
공익 옹호관
Betsy Gotbaum



공익 옹호관 Betsy Gotbaum 과 뉴욕 이민자 연맹 디렉터 흥정화님의 메시지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께,

이민자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뉴욕시로 옵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삼백만이 넘는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전 뉴욕 시민의 삼분의 일 이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의 경제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생기를 불어 넣으며 저희 시를 미국에서 가장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시로 만들어 줍니다.

다수의 이민자들은 매우 성공적으로 안착했지만 영어를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다른 이민자들은 종종 건강보험이나 다른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저임금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직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은 자신이나 가족들을 위해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에도 어떤 이들은 혜택 신청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자격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 무료 안내서에는 연방, 주, 및 시에서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일반 정보와 혜택 수혜에 요구되는 수혜자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혜 자격은 혜택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혜택마다 각각 신청 요건과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족의 신청 절차를 위해 비영리 단체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십시오. (212)669-7250으로 공익 옹호관 사무실에 연락해도 됩니다.

귀하의 체류 신분이 확실치 않을 경우엔 이민 변호사에게 귀하의 수혜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뉴욕 이민 핫라인(212) 419-3737 또는 (800) 566-7636으로 연락하십시오. 핫라인은 17개국의 언어로 이민 및 시민권 취득에 관한 일반 질문에 답해 드리며 귀하를 도울 수 있는 단체로 소개서를 써드립니다.

뉴욕시는 귀하와 같은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들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수혜자격이 있는 혜택 및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212) 419-3737, 공익 옹호관 사무실 (Public Advocate Office)로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진심으로,

Betsy Gotbaum
공익 옹호관

Chung-Wha Hong
NYIC 디렉터

테이블 목차

뉴욕 이민자를 위한 공공혜택	4
공공 혜택 수혜자격 결정에 사용되는 수혜자 카테고리	4
자격 카테고리가 포함된 공공혜택 도표 읽는 방법	5
수혜자 카테고리가 포함된 공공혜택 도표	6
공공혜택	
재정 보조 프로그램	
소셜시큐리티 생활 보조금 (SSI).....	8
소셜시큐리티 장애보험(SSD)	8
홈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HEAP) (일반 및 비상)	9
현금보조(공공보조 또는 웰페어)(가정 보조 및 안전망 보조).....	10
연방 및 (엠파이어) 주 어린이 세금 공제	11
연방, 주, 및 시 자녀 및 부양가족양육비 세금 공제.....	12
연방, 주, 및 시 근로소득세액 공제(EITC).....	13
노령자 및 장애자를 위한 할인수수료 메트로 카드 (Fare Metro Card).....	14
실업보험.....	14
식품 및 영양 프로그램	
푸드 스탬프(일반 및 신속처리)	15
학교급식(아침 및 점심).....	16
여름학기 급식 (아침 및 점심).....	16
여성, 유아, 어린이 (WIC) 프로그램	17
생필품 보조 식료품 프로그램 (CSFP).....	17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차일드케어.....	18
조기 교육.....	18
유치원 입학 전 어린이(UPK).....	19
방과후 시간 (OST).....	19

건강 보험 프로그램

소기업, 개인회사 및 노동자를 위한 건강한 뉴욕 프로그램 (Healthy NY).....	20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이드 초과 소득 프로그램 (Medicaid and Medicaid Excess Income Program).....	21
가족 건강 플러스 (Family Health Plus).....	22
차일드 헬스플러스(Child Health Plus) (Children’s Medicaid 및 Child Health Plus B).....	23
산전 관리 보조 프로그램(Prenatal Care Assistance Program, PCAP).....	24
메디케어(Medicare) (파트 A 및 B).....	25
노령자 의약품 보험 프로그램 (Elderly Pharmaceutical Insurance Coverage (EPIC) Program).....	26

건강 관리 서비스 프로그램

간호사와 가족 파트너십 (Nurse Family Partnership).....	27
가족계획 혜택 프로그램 (Family Planning Benefit Program, FPBP).....	27

하우징 프로그램

장애자 렌트 인상 면제 (Disability Rent Increase Exemption, DRIE).....	28
시니어 시티즌 렌트 인상 면제 (Senior Citizen Rent Increase Exemption, SCRIE).....	29
시니어 시티즌 주택 소유자 면제 (Senior Citizen Homeowner’s Exemption, SCHE).....	29
교육세 면제(School Tax Relief, STAR).....	30
장애인 주택 소유자 면제(Homeowners’ Exemption, DHE).....	30
재향군 면제(Veteran’s Exemption).....	31
공공 주택(Public Housing).....	31
섹션 8 주택 보조(Section 8 Housing Assistance).....	32

혜택 신청과 관련해 자주받는 질문들 (FAQs).....	33
--	-----------

수혜자 카테고리 용어집.....	34
--------------------------	-----------

뉴욕 이민자를 위한 공공혜택

많은 이민자들은 혜택을 신청하게 되면 출국했다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자신의 체류신분이 위태로워질 것을 두려워하여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또는 혜택을 신청할 경우 그들이 합법적인 거주자나 시민이 될 가능성에 영향을 끼칠것을 염려하여 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민자들은 혜택관리부에서 국토방위국(DHS)에 보고를 할까 걱정을 합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무관합니다. 법에 의하면 시 기관에서 귀하의 체류신분에 관해 질문하거나 귀하의 체류신분을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류미비 이민자는 주 및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공공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그들의 시민권자인 자녀에게는 그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서류미비 이민자라면 귀하는 푸드스탬프 수혜자격이 없어도 시민권자인 귀하의 자녀를 위해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혜택 수혜자격 결정에 사용되는 수혜자 카테고리

굵은 글씨로 쓴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 안내서 맨 뒤에 있는 용어집을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 미국인 또는 자격있는 외국인 (또한 자격있는 이민자로 불림)은 연방, 주, 시 혜택을 수혜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있는 이민자는 다음 중 하나에 속합니다:

- 합법적인 영주권자 (영주권자인 외국인 또는 그린카드 소유자)
- 합법적으로 거주중인 현역 또는 명예제대한 재향군인 및 그들의 가족
- 피난민
- 정치망명자
- 추방 또는 제거 명령이 보류된 이민자
- 쿠바인 또는 하이티인 입국자
- 아시아계 미국인
- 인신매매 피해자인 이민자 (T 비자 소유인)
- 미국에 임시 입국이 허용된 이민자 (최소 1년)
-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구타당한 배우자 및 자녀

뉴욕주 **PRUCOL**(합법적이진 않으나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는 오직 뉴욕주와 시에서 제공하는 혜택만을 수혜할 수 있습니다. PRUCOL은 공식적인 체류 신분은 아니지만 많은 이민자들을 이 카테고리에 해당됩니다. PRUCOL 카테고리는 이민자가 특정한 혜택을 수혜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설명할때 사용됩니다. PRUCOL 이민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토안보부 (DHS)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추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사람들입니다. PRUCOL의 예로는 **범죄 피해자 (U 비자 소지자)**, 미국에서 1년 미만 임시 거주가 허락된 이민자, 소송이 연기된 상태인 이민자 그리고 그 밖의 종류의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입니다. PRUCOL은 “자격있는 외국인” 카테고리와 마찬가지로 이민 체류 신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공공 혜택 수혜자격을 주기위해 사용되는 카테고리입니다.

PRUCOL뿐 아니라, 서류미비 이민자 (**Undocumented immigrants**)도 혜택과 관련된 또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서류미비 이민자는 단지 몇가지의 공공혜택에 대해서만 수혜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소득 (푸드스탬프나 생활보조금 등)을 보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 프로그램은 자격이 없는 (PRUCOL 또는 서류미비자) 성인이 자격이 있는 가족 (시민권자인 자녀 또는 자격있는 이민자 자녀)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 카테고리가 있는 공공 혜택 도표를 읽는 방법

이 안내서를 보면 각 혜택마다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는지가 나와있습니다. 자격있는 이민자, PRUCOL 이민자, 및 서류미비 이민자 등. 각 혜택을 수혜하는데 요구되는 수혜자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아시려면 아래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도표를 읽으려면

- 1) 맨 윗 줄에서 수혜자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아래로 내려가 귀하가 수혜할 수 있는 혜택을 보거나 혹은
- 2) 첫 칼럼에서 혜택을 선택하여 페이지 맞은편으로 가면 그 혜택을 수혜하는데 요구되는 수혜자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도표에서 “X” 는 그 수혜자 카테고리에 속한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음을 뜻하며 “NO”는 수혜자격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서류미비 이민자일 경우에도 자격있는 자녀를 위해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혜자 카테고리가 있는 공공혜택 도표

	자격있는 이민자										PRUCOL	N/A
	인도적 입국자											
	합법적인 영주권자 (LPR) (영주권 소지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영미계대안 재정권인 가족	피난민	장자명명자	쿠바 또는 아이티인 입국자	쿠바 또는 아이티인 입국자	아시아계 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인 이민자(비자 소지인)	미국에 임시 입국이 허용된 이민자 (최소 1년)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의 귀터당할 배우자 및 자녀들	PULCO(비자 소지인 포함)	서류미비자
재정 지원 프로그램												
소셜시큐리티 생활 보조금(SSI)	X ¹	X	X ²	X ²	X ²	X ²	X ²	X ²	No	No	No	No
소셜시큐리티 장애보험(SSD)	X	X	X	X	X	X	X	X	X	X	No ¹	No
가정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HEAP) (일반)	X	X	X	X	X	X	X	X	X	X	No	No
가정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HEAP) (비상시)	X	X	X	X	X	X	X	X	X	X	No	No
현금지원(가정 보조)	X ³	X	X	X	X	X	X	X	X ³	X ³	No	No
현금지원(안전망 보조)	X	X	X	X	X	X	X	X	X	X	X	No
어린이 세금 공제(연방)	X	X	X	X	X	X	X	X	X	X	X	X
엠파이어 주 어린이 세금 공제(주)	X	X	X	X	X	X	X	X	X	X	X	X
어린이 및 부양가족 세금 공제 (연방)	X	X	X	X	X	X	X	X	X	X	X	X
어린이 및 부양가족 세금 공제(주)	X	X	X	X	X	X	X	X	X	X	X	X
어린이 및 부양가족 세금 공제(시)	X	X	X	X	X	X	X	X	X	X	X	X
근로소득세 공제(EITC) (연방)	X	X	X	X	X	X	X	X	X	X	X	No
근로소득세 공제(EITC) (주)	X	X	X	X	X	X	X	X	X	X	X	No
근로소득세 공제(EITC) (시)	X	X	X	X	X	X	X	X	X	X	X	No
노령자를 위한 할인요금 메트로 카드(Fare Metro Card)	X	X	X	X	X	X	X	X	X	X	X	X
지체자를 위한 할인요금 메트로 카드(Fare Metro Card)	X	X	X	X	X	X	X	X	X	X	X	X
실업보험	X	X	X	X	X	X	X	X	X	X	X	No
식품 및 영양 프로그램												
Food Stamps (Regular and Expedited)	X ⁴	X	X	X	X	X	X	X	X ⁴	X ⁴	No	No
푸드스탬프(일반 및 신속)	X	X	X	X	X	X	X	X	X	X	X	X
여름학기 급식 (아침 및 점심)	X	X	X	X	X	X	X	X	X	X	X	X
여성, 유아, 어린이 (WIC) 프로그램	X	X	X	X	X	X	X	X	X	X	X	X
생필품 보조 식품 프로그램 (CSFP)	X	X	X	X	X	X	X	X	X	X	X	X

X¹ 장기간 일한 내력을 증명할 수 있거나 또는 1996년 8월 22일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엔 SSI 수혜자격이 있음.

X² 미국에 1996년 8월 22일 이후에 입국한 사람은 SSI만 수혜할 수 있음. 입국후 7년간 자격이 주어짐. 장래는 9년으로 변경 될 수 있음.

X³ 5년간의 규제가 있으나 안전망 보조금 (Safety Net Assistance)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

No¹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일 경우에는 예외.

X⁴ 장애자가 아닌 성인은 5년을 기다려야 함.

	자격있는 이민자											PRUCOL	N/A
	인도적 입국자												
자녀가 있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차일드케어	X	X	X	X	X	X	X	X	X	X	X	No	No
조기 교육	X	X	X	X	X	X	X	X	X	X	X	X	X
유니버서 프리킨더 (UPK)	X	X	X	X	X	X	X	X	X	X	X	X	X
방과후 시간(OST)	X	X	X	X	X	X	X	X	X	X	X	X	X
건강 보험 프로그램													
건강한 NY 프로그램(개인)	X	X	X	X	X	X	X	X	X	X	X	X	X
건강한 NY 프로그램(회사)	X	X	X	X	X	X	X	X	X	X	X	X	No
건강한 NY 프로그램(중소기업)	X	X	X	X	X	X	X	X	X	X	X	X	No
메디케이드(Medicaid)	X	X	X	X	X	X	X	X	X	X	X	X	X ⁵
초과 소득이 있는 메디케이드 (Medicaid Excess Income)	X	X	X	X	X	X	X	X	X	X	X	X	No
가족건강 플러스(Family Health Plus)	X	X	X	X	X	X	X	X	X	X	X	X	No
어린이 메디케이드(차일드헬스 플러스A)	X	X	X	X	X	X	X	X	X	X	X	X	No
차일드헬스 플러스 B(Child Health Plus B)	X	X	X	X	X	X	X	X	X	X	X	X	X ⁶
산전관리 보조 프로그램 (Prenatal Care Assistance Program)	X	X	X	X	X	X	X	X	X	X	X	X	X
메디케어 (파트 A 및 B)	X	X	X	X	X	X	X	X	X	X	X	No	No
노령자 의약품 보험 혜택 (Elderly Pharmaceutical Insurance Coverage)	X	X	X	X	X	X	X	X	X	X	X	No	No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													
간호사와 가족 파트너십 (Nurse Family Partnership)	X	X	X	X	X	X	X	X	X	X	X	X	X
가족계획 혜택 프로그램(Family Planning Benefit Program)	X	X	X	X	X	X	X	X	X	X	X	X	No
주택 프로그램													
장애자 렌트 인상 면제 (Disability Rent Increase Exemption, DRIE)	X	X	X	X	X	X	X	X	X	X	X	X	No
시니어 시티즌 렌트 인상 면제 (Senior Citizen Rent Increase Exemption, SCRIE)	X	X	X	X	X	X	X	X	X	X	X	X	No
시니어 시티즌 주택 소유자 면제 (Senior Citizen Homeowner's Exemption, SCHE)	X	X	X	X	X	X	X	X	X	X	X	X	No
교육세 면제 (School Tax Relief, STAR) (기본 및 강화된)	X	X	X	X	X	X	X	X	X	X	X	X	No
장애인 주택 소유자 면제(Disabled Homeowner's Exemption, DHE)	X	X	X	X	X	X	X	X	X	X	X	X	No
재향군 면제(Veteran's Exemption)	X	X	X	X	X	X	X	X	X	X	X	X	No
공공 하우징(Public Housing)	X	X	X	X	X	No ²	X	X	X	No	No ³	No ³	No ³
섹션 8 주택 보조(Section 8 Housing Assistance)	X	X	X	X	X	No ²	X	X	X	No	No ³	No ³	No ³

X⁵ 임신부는 수혜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서류미비자 이민자들은 비상시 메디케이드(Emergency Medicaid) 수혜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X⁶ 서류미비자 어린이만 해당됨.
No² 미국에 임시거주가 허락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격이 있음.
No³ 가족 중 최소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자격있는 이민자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나 혜택이 더 적음.



재정 보조 프로그램

소셜시큐리티 생활 보조금 (SSI)

SSI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령자, 장애인 또는 시각 장애인에게 매달 음식, 의복 및 하우스링을 위해 매달 현금을 지급합니다.

소셜시큐리티 생활 보조금 (SSI)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수혜자격있는 이민자의 대부분은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는 수혜할 수 없음. ¹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시각 장애인, 65세 혹은 65세 이상인 사람 이어야함. • 가정 소득이 정해진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됨. • 자산 가치가 정해진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됨. • 그 외에 모든 현금 혜택 프로그램도 신청해야만 함.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ssa.gov/ssi/ • http://www.ssa.gov/ssi/text-understanding-ssi.htm • 사회복지국: (800) 772-1213. 청각 장애인은 (800) 325-0778로 전화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본인이 직접 소셜시큐리티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혹은 전화로 (아래 참조) 신청해야 함.
사무실 위치:	소셜시큐리티 사무실 위치는 https://secure.ssa.gov/apps6z/FOL0/fo001.jsp 를 방문하거나 또는 (800) 772-1213로 연락하면 알 수 있음.

소셜시큐리티 장애 보험 (SSD)

SSD는 노동자가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게 되면 노동자 및 수혜자격있는 가족 인원에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자가된 노동자, 미망인, 홀아비, 자녀 또는 어렸을때 부터 장애자가된 성인은 누구든지 SSD 수혜자격이 있습니다.

소셜시큐리티 장애 보험 (SSD)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자격있는 이민자 및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다소의 PRUCOL)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일년간 일할 수 없었던 시각 장애인 또는 장애자이어야 함. • 근무 내력과 장애자가된 연도를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연방 세금을 지불했던 사람이어야 함. • 가정 소득이나 또는 소유 재산에 한계가 적용되지 않음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ssa.gov/dibplan/index.htm • 사회복지국: (800) 772-1213. 청각 장애인은 (800) 325-0778로 전화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직접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을 방문하여 • 사회복지국: (800) 772-1213 • 온라인 주소 http://www.ssa.gov/applyfordisability/adult.htm
사무실 위치:	소셜시큐리티 사무실 위치는 https://secure.ssa.gov/apps6z/FOL0/fo001.jsp 를 방문하거나 또는 (800) 772-1213로 연락하면 알 수 있음.

¹귀하가 1996년 8월 22일 이후에 미국에 온 피난민, 정치망명자, 추방이나 제거가 보류된 자, 쿠바 또는 아이티인 입국자, 아시아계 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일 경우에는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는 단지 7년 동안 SSI를 수혜할 자격이 있습니다. 장래에는 혜택 기간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 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합법적 영주권자이면서 합법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일했거나 또는 1996년 8월 22일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SSI를 수혜할 자격이 있습니다.

가정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HEAP)

HEAP는 주택 난방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년에 \$40에서 \$540까지 지급합니다. 귀하의 연료가 고갈되기 직전, 또는 난방공급이 중단 되기 직전일 경우에도 HEAP 비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HEAP	비상 HEAP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자격있는 이민자. 자격없는 성인은 자격있는 가족 인원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음.	자격있는 이민자. 임대 계약서에 지명된 임차인이 자격있는 이민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격있는 혹은 시민권자인 가족 인원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음.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소득이 정해진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됨. 난방비를 직접 지불하고 있거나 또는 난방비가 포함된 렌트비를 지불하고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난방공급이 중단 되거나 연료 저장량이 10일 미만인 경우) HEAP가 요구하는 일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왼쪽 사항 참조) 임대 계약서에 반드시 이름이 기재되고 그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반드시 긴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없어야 함.
추가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www.otda.state.ny.us/main/heap/ http://www.nyc.gov/html/hra/html/family_independence/heap.shtml?__o3rpu=IHSS_S054_programsPagePage.do%3FsequenceNumber%3D4 NYC HEAP 핫라인: (800) 692-0557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http://www.otda.state.ny.us/main/heap/application.asp 신청서는 11월에 제공됨.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신청 권장.	
사무실 위치:	http://www.nyc.gov/html/hra/downloads/pdf/HRA_HEAP_office_locations.pdf	

현금 보조 (공공 보조 또는 웰페어)

공공 보조 또는 웰페어로 알려진 현금 보조는 자격있는 성인과 가족에게 생활비 보조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현금 보조(Cash Assistance) 프로그램엔 가정 보조 (FA)와 안전망 보조 (SNA) 두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FA는 연방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연방 이민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금 보조는 식품과 옷, 렌트비나 모게지, 유틸리티 비용 및 기타 특별히 요구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관련 기관에 통역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 보조 (FA)	안전망 보조 (SNA)
혜택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혹은 다른 친척과 함께 사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현금보조 제공. • 기간은 60개월로 제한됨. 	독신 성인, 무자녀 부부, 성인인 친척들과 떨어져 사는 어린이, 가정 보조를 60개월 이상 수혜한 사람 및 가정 보조 수혜자격이 없는 이민자.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수혜자격있는 이민자 ^{2,3}	수혜자격있는 이민자 ⁴ 및 PRUCOL (U 비자 소지자 포함)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소득이 정해진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됨. • 재산 가치가 정해진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됨. • 일단 혜택을 받게되면 정해진 시간만큼 일해야 함. • 반드시 면접 인터뷰를 해야함.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nyc.gov/html/hra/html/questions_answers/temporary_assistance.shtml • http://www.otda.state.ny.us/main/ta/ • HRA 인포라인: (877) 472-8411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HRA Job Centers에 신청서가 마련되어 있음.	
사무실 위치:	Job Center 사무실 위치는, 뉴욕주 임시 보조 (New York State Temporary Assistance) 핫라인에: (800) 342-3009 으로 연락하거나 http://www.nyc.gov/html/hra/html/family_independence/job_center_sites.shtml 을 방문하십시오. HRA 취업 센터 (HRA Job Centers)에서도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²합법적인 영주권자, 미국에 최소 1년간 임시 입국이 허용된 이민자 및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구타당한 이민은 배우자는 자격이 있는지 5년 후 부터는 가정 보조 (Family Assistance)를 수혜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외에 모든 자격있는 이민자는 혜택을 받는데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³이 혜택을 받게되면 귀하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다른 혜택은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⁴상기 설명 참조.

연방 및 (엠파이어) 주 어린이 세금 공제

어린이 세금 공제는 자격있는 자녀를 둔 가정에 제공되는 연방 및 주 소득세 공제입니다.

연방세 공제 및 추가 어린이 세금 공제 엠파이어주 어린이 세금 공제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개인 납세자 번호 (ITIN)가 있는 사람. ⁵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31일자로 자녀가 17세 미만이어야 함. • 신청을 하는 해에 자녀가 귀하와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함. • 납세신고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야 함. •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자격있는 이민자라야 함. • 어린이 세금 공제를 청구하려면 미지불된 세금이 있어야 함. 어린이 세금 공제는 빚진 세금을 삭감해 주며 빚진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적 어린이 세금 공제 (Additional Child Tax Credit) 를 통해 환부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주에서 최소한 1년을 거주 했어야 함. • 연방 어린이 세금 공제를 신청하거나 또는 가정 소득이 정해진 액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12월 31일자로 최소 4세인 자녀가 있어야 함. • 자녀는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개인 번호가 있어야 함. • 공제 혜택은 빚진 세금을 삭감해 주거나 빚진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환부해줌.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irs.gov/pub/irs-pdf/p972.pdf • IRS: (800) 829-1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tax.state.ny.us/pit/income_tax/empire_state_child_credit.htm • http://www.tax.state.ny.us/pdf/2007/inc/it213i_2007.pdf • 뉴욕주 세무 및 재정부 (NYS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800) 225-5829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 어린이 세금 공제 신청을 위한 개별된 양식 없음. • 추가적 어린이 세금 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를 신청하려면 양식 8812를 작성하십시오. http://www.irs.gov/pub/irs-pdf/f8812.p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tax.state.ny.us/pdf/2007/killin/inc/it213_2007_fill_in.pdf

⁵서류미비 이민자와 그 외에 자격있는 이민자들은 개인 납세자 번호 (ITIN)를 사용해 납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방, 주, 시에서 제공하는 자녀와 부양가족 양육비 세금 공제

이 세금 공제 혜택은 자신이 일을 가야하기 때문에 혹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자녀나 부양 가족을 맡기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연방 공제	주 공제	시 공제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사회보장제도 번호나 개인 납세자 번호(ITIN) ⁶ 가 있는 사람 ⁶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이 있어야함. •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가 일을 가야하기 때문에 혹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부양가족/차일드케어 비용을 지불했어야 함.⁷ • 자신을 돌볼 수 없는 13세 미만의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함. • 신청하는 해에 자녀/부양가족이 6 개월 이상 귀하와 함께 거주했어야 함. • 자녀/부양가족이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개인 납세자 번호가 있어야 함. • 차일드케어 비용이 지불된 사람의 연락처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제공해야 함 (또는 ITIN 번호). • 공제 혜택은 빚진 세금을 삭감해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 공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주 정부 공제 혜택도 신청할 수 있음. • 연방 공제 혜택과 동일한 요건이 요구됨. • 공제 혜택은 미지불된 세액을 삭감해 주거나 혹은 빚진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환불해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정부 공제 혜택 수혜자격이 있어야 함. • 뉴욕시에 거주해야 함 • 가정 소득이 정해진 액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12월 31일자로 4세 미만인 자녀의 차일드케어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어야 함. • 신청하는 해에 자녀가 6 개월 이상 귀하와 함께 거주했어야 함. • 공제 혜택은 미지불된 귀하의 세액을 삭감해 주거나 혹은 빚진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환불해줌.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irs.gov/pub/irs-pdf/p503.pdf • 국세청(IRS): (800) 829-1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tax.state.ny.us/pit/income_tax/child_and_dependent_care_credit.htm • http://www.tax.state.ny.us/pdf/2007/inc/it216i_2007.pdf • 뉴욕주 세무 및 재정부(NYS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800) 225-5829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irs.gov/pub/irs-pdf/f2441.pdf (양식 1040이나 양식 1040NR을 제출할 경우에만) • http://www.irs.gov/pub/irs-pdf/f1040as2.pdf (양식 1040A 를 제출할 경우에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tax.state.ny.us/pdf/2007/illin/inc/it216_2007_fill_in.p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된 양식이 없음(주 정부 양식 사용).

⁶상기의 설명 참조.

⁷차일드케어 비용을 지불받는 사람은 귀하의 배우자, 자녀의 부모 혹은 귀하가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될 수 없습니다.

연방, 주 및 시 근로소득세 공제 (EITC)

근로소득세 공제 (EITC)는 연방, 주 및 시에서 저소득 가정과 개인에게 제공하는 소득세 공제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미지불된 귀하의 세액을 삭감해 주거나 혹은 빚진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환불해줍니다.

	연방 공제	주 공제	시 공제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자격있는 이민자 및 PRUCOL (U 비자 소지자 포함) ⁸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소득이 정해진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됨. 투자 소득이 반드시 \$2,900 이하이어야 함. 무자녀자는 나이가 25세에서 65세 사이여야 함. 유자녀자일 경우에는 아들, 딸, 의붓자녀, 수양자녀, 양자/양녀 및 남녀형제, 이복형제, 손주가 자녀에 해당됨. 자녀의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 함. 신청하는 해에 자녀가 귀하와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함. 12월 31일자로 자녀가 19세 미만 (풀 타임 학생인 경우에는 24세 미만)이어야 함. 전체적 및 영구적 장애를 가진 자녀는 연령과 무관함. 미국에 1 년 내내 거주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EITC를 청구 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EITC를 청구 했어야 함 뉴욕주에 거주해야 함.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www.nyc.gov/html/dca/html/initiatives/eitc.shtml?__o3rpu=IHSS_S054_programsPagePage.do%3FsequenceNumber%3D4 http://apps.irs.gov/app/eitc2007/SetLanguage.do?lang=en http://apps.irs.gov/app/eitc2007/SetLanguage.do?lang=es (Spanish) IRS: (800) 829-1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www.nyc.gov/html/dca/html/initiatives/eitc.shtml?__o3rpu=IHSS_S054_programsPagePage.do%3FsequenceNumber%3D4 http://www.tax.state.ny.us/pdf/2007/inc/it215i_2007.pdf NYS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800) 225-5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www.nyc.gov/html/dca/html/initiatives/eitc.shtml?__o3rpu=IHSS_S054_programsPagePage.do%3FsequenceNumber%3D4 NYS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800) 225-5829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http://www.irs.gov/pub/irs-pdf/f1040sei.pdf (자격있는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사용)	http://www.tax.state.ny.us/pdf/2007/killin/inc/it215_2007_fill_in.pdf	개별된 양식은 없으나 (주 정부 양식 사용) 주 정부 양식에 있는 시산 용지 C를 첨부해야 함. http://www.tax.state.ny.us/pdf/2007/inc/it215i_2007.pdf

⁸납세자 및 납세자가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는 자녀는 누구든지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할인 요금 메트로카드(Reduced Fare MetroCard)

MTA는 고령자나 특정 장애인에게 할인 요금 메트로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MTA요금은 \$2이지만 할인된 요금은 \$1입니다. 체류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할인수수료 메트로카드(MetroCard)	장애자를 위한 할인수수료 메트로카드(MetroCard)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누구든지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65세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함.	다음 중 한가지를 갖고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걷는데 장애 • 양쪽 손 상실 • 정신 지체 • 연령 외에 다른 이유로 메디케어를 수혜하고 있음. • 중증 정신 질환이 있으며 SSI 혜택을 받고 있음.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mta.info/nyct/fare/rfindex.htm • (212) METROCARD (638-7622)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mta.info/nyct/fare/pdf/seniors.pdf • 지하철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mta.info/nyct/fare/pdf/disabled.pdf • 지하철 역
사무실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uced Fare MetroCard Walk-in Service Center (예약 없이 방문하는 서비스 센터) • 3 Stone Street (브로드웨이와 Broad Street 사이) • 메트로카드 버스 또는 밴 위치(MetroCard Bus or Van location)를 확인하려면 다음 사이트 방문: http://www.mta.info/metrocard/mms.htm 	

실업 보험

귀하가 실직한 것이 귀하의 잘못으로 인한것이 아닐 경우에는 최고 26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⁹

실업 보험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자격있는 이민자 및 PRUCOL (U 비자 소유자) (노동 승인이 반드시 필요함)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 당하지 않은 실업자.¹⁰ • 일을 할 준비, 의지 및 능력이 있어야 됨. • 일자리를 찾는 중 이어야 함. •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어야 함.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labor.state.ny.us/ui/ui_index.shtm?__o3rpu=IHSS_S054_programsPagePage.do%3FsequenceNumber%3D4 • 실업보험 청구 전화 번호 (Unemployment Insurance Telephone Claims Line): (888) 209-8124 • 추가적인 연락처와 주소: http://www.labor.state.ny.us/ui/bpta/Important%20Telephone%20Numbers.shtm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으로 보험 청구서 제출: https://ui.labor.state.ny.us/UBC/home.do?FF_LOCALE=1 • 보험 청구 전화 번호: (888) 209-8124 •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광둥어, 표준 중국어, 크리올어, 기타 언어 유효)

⁹2009년 3월 29일까지 신청하면 13주간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¹⁰예를들어: 일거리가 없음 (임시 또는 계절 일거리가 끝남), 일자리가 제거됨, 해고됨, 회사가 폐쇄됨 등. 일반적으로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 당한 경우에는 실업보험을 받을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케이스에 대해 상담하려면 실업보험 케이스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식품 및 영양 프로그램

푸드스탬프

저소득 가정은 푸드스탬프를 사용하여 다수의 식품점과 마켓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수혜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직불카드(debit card) 처럼 사용되는 카드를 받게 됩니다. 비상 시에는 일반 푸드스탬프 보다 신속히 제공되는 급행 푸드스탬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푸드스탬프	급행 푸드스탬프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자격있는 이민자 (장애자가 아닌 합법적인 영주권자, 미국에 최소 1년간 임시 입국이 허용된 이민자 및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구타당한 이민은 배우자는자격이 있는지 5년 후 부터는 수혜할 수 있음. 다른 수혜자 카테고리에 속한 모든 성인은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음.)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¹¹ 소득이 정해진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됨. 일단 혜택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정해진 시간만큼 업무에 종사해야 함. 대부분의 신청자는 면접 인터뷰를 해야 함.¹² (사무실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뷰를 스케줄해도 무관함)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재산 가치에 적용되는 한계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푸드스탬프 수혜 요건을 갖추어야 함. (왼쪽 참조). 다음 중에서 한 가지 사항을 만족 시켜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이 소유한 현금 및 자금의 합계가 \$100 미만이며 신청하는 달에는 소득이 \$150미만임. 귀하의 소득과 기타 자금이 렌트나 모기지, 난방, 유틸리티 비용 및 전화비를 합친 금액보다 적음. 귀하는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혹은 계절 노동자임. 인터뷰 및 결정은 신청서가 접수된 당일 결정됨.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www.otda.state.ny.us/main/foodstamps/ http://www.nyc.gov/html/hra/html/family_independence/serv_nutritional_program.shtml?_o3rpu=IHSS_S054_programsPagePage.do%3FsequenceNumber%3D4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HRA 인포 핫라인(HRA InfoLine): (877) 472-8411	
사무실 위치:	http://www.otda.state.ny.us/main/apps/default.asp#fs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및 러시아어)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푸드스탬프 사무실을 찾으려면 뉴욕시 핫라인에 (877) 472-8411로 연락을 하거나 또는 http://www.nyc.gov/html/hra/downloads/pdf/food_stamps_brochure_1207.pdf 를 방문하십시오. 현금 보조(Cash Assistance)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 전역에 위치한 HRA 취업 센터 Centers 에서 푸드스탬프 신청서도 접수합니다.	

¹¹푸드스탬프 신청서는 가정을 친척 관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함께 식품을 구입하고 요리하는 사람들이나 그룹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¹²장래에 어떤 사람들은 면접 인터뷰를 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그러나 이 변경이 시행되는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급식 (아침 및 점심)

뉴욕시에서는 소득 수준이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아침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점심은 학생의 가정 소득에 따라 \$1.50 또는 \$0.25 또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푸드스탬프나 현금 보조(Cash Assistance) 수혜 가정의 자녀는 학교에서 자동으로 무료 점심이 제공됩니다.

학교 아침		학교 점심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누구든지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전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되나 신청서를 작성 해야 함. ¹³	가정 소득에 따라 무료 점심을 받게될지 혹은 할인된 점심을 받게될지가 결정됨.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opt-osfns.org/osfns/meals/default.aspx?__o3rpu=IHSS_S054_programsPagePage.do%3FsequenceNumber%3D4 •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로 연락하십시오.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http://www.opt-osfns.org/osfns/meals/forms_reduced.aspx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불어, 히브리어, 이태리어, 희랍어, 한국어, 폴란드어, 아랍어, 우르두어, 아이티 프랑스어)	

여름학기 급식(아침과 점심)

여름학기 급식 프로그램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어린이들에게 아침 및 점심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6월말에 시작하여 8월말에 끝나며 700개 이상의 학교, 공원, 수영장, 도서관 및 뉴욕시 주택공사 건물 (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buildings)에서 제공됩니다.

여름학기 급식(아침 및 점심)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누구든지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18세 이하의 어린이여야 함.
추가적인 정보와 연락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opt-osfns.org/osfns/resources/sch_search/SummerMeals.aspx • 학교 음식: (718) 707-4300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신청서는 없음
급식 제공 장소:	6월 중순에 http://www.opt-osfns.org/osfns/resources/sch_search/SummerMeals.aspx 에 발표됨.

¹³자녀들이 누구든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신청서는 1부만 요구됩니다. 신청서에는 집에 거주하는 성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요구하게 됩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없음" 이라고 기재해주십시오.

여성, 유아, 어린이 (WIC) 프로그램

WIC는 우유, 주스, 유아용 유동식 및 기타 건강 식품을 저소득 임신부, 어린이 및 어머니들에게 제공합니다. 체류 신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푸드스탬프, 현금 보조 또는 메디케이드를 수혜하는 여성은 자동적으로 WIC 수혜자격이 있게 됩니다.

여성, 유아, 어린이 (WIC) 프로그램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누구든지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의 하나에 속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했거나, 아기를 출산 했거나 혹은 모유를 먹고 있는 여성.¹⁴ - 5세 미만의 어린이나 유아. • 반드시 뉴욕시 거주자이어야 함. • 음식 부족으로 건강상 위험한 상태라고 의사, 간호사 및 영양학자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¹⁵ • 가정 소득이 정해진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됨.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health.state.ny.us/prevention/nutrition/wic/ • http://www.fns.usda.gov/wic/aboutwic/ • 건강하게 성장 핫라인 (Growing Up Healthy Hotline): (800) 522-5006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http://www.health.state.ny.us/nysdoh/fhplus/application.htm (영어와 스페인어)
사무실 위치:	건강한 성장 핫라인 (Growing Up Healthy Hotline) (800) 522-5006로 전화하면 WIC 지역 사무실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병원 및 지역사회 보건소)

생필품 보조 식료품 프로그램 (CSFP)

CSFP는 저소득층 어머니, 임신부, 어린이 및 최소 60세인 노령자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체류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식품은 한 달에 한번 특정한 장소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CSFP 와 WIC에 동시에 가입될 수 없습니다.

생필품 보조 식료품 프로그램(CSFP)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누구든지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다음 중 하나에 속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 혹은 출산모 (출산 1년 후까지) - 신생아 부터 6세까지의 어린이 - 60세 이상의 노령자 • 가정 소득이 정해진 액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뉴욕주 거주자
추가적인 정보와 연락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health.state.ny.us/prevention/nutrition/csfp/ • http://www.fns.usda.gov/fdd/programs/csfp/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신청서는 아래 CSFP 지정 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락처나 사무실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퀸즈 카운티(Queens County): Builders for the Family and Youth 89-56 162nd Street, Jamaica, NY 11432 (718) 523-2220 • 킹즈 카운티(Kings County): Kings County Hospital Center 840 Alabama Avenue, Brooklyn, NY 11207 (718) 498-9208

¹⁴모유를 먹이는 산모는 출산 후최고 12개월까지 수혜자격이 있습니다. 모유를 먹이지 않는 산모는 최고 6개월까지 수혜자격이 있습니다.

¹⁵이 검사는 무료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차일드케어 (Child Care)

어린이 서비스 관리국(ACS)은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저소득 가정에 차일드케어 바우처나¹⁶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의 차일드케어를 제공합니다. ACS 차일드케어의 주당 수수료는 가정 소득에 의해 좌우됩니다. 풀타임 케어 수수료는 그 가정 소득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부모님들은 파트타임 케어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자격있는 이민자 (자녀의 체류신분만 중요함)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나이가 6주에서 12세 사이 또는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하는 (장애) 자녀일 경우에는 18세 미만이어야 함. • 가정 소득이 정해진 액수를 초과 해서는 안됨. • 차일드케어가 필요한 이유가 다음 중 한 가지와 같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하가 취업 또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받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 - 귀하가 병으로 인해 자녀를 돌볼 수 없음. - 귀하가 집에 있을 수 없으며 자녀를 돌볼 성인이 없음. - 귀하의 자녀나 가족이 ACS 나 HRA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¹⁷ • 외부모일 경우에는 자녀와 따로사는 부모에게 양육비 보조를 받도록 노력해야함. • 면접 인터뷰를해야 함.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nyc.gov/html/acs/html/child_care/child_care_information.shtml?__o3rpu=IHSS_S054_programsPagePage.do%3FsequenceNumber%3D4 • http://www.nyc.gov/html/acs/html/child_care/child_care_eligibility.shtml • ACS 정보 및 위탁 부서(Information and Referral Department): (917) 228-7076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신청서를 얻으려면 (917) 228-7076으로 ACS정보 및 위탁 부서(Information and Referral Department)로 연락하십시오.
차일드케어 제공 장소:	차일드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http://www.nyc.gov/html/acs/downloads/pdf/childcare_contract_agencies.pdf 를 방문하십시오.

조기 교육

유아 조기 교육 및 조기 교육 프로그램은 자격있는 신생아 부터 5살 까지의 어린이에게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는 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체류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현금 보조나 SSI 수혜 가정의 어린이는 자동적으로 수혜 자격이 있게 됩니다.

조기 교육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누구든지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세 이하의 어린이여야 함. • 가정 소득이 정해진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됨.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nyc.gov/html/acs/html/child_care/headstart.shtml?__o3rpu=IHSS_S054_programsPagePage.do%3FsequenceNumber%3D4 (영어) • http://www.nyc.gov/html/acs/downloads/pdf/headstart_spanish.pdf (스페인어) • http://www.nyc.gov/html/acs/downloads/pdf/headstart_creole.pdf (크리올어) • ACS 조기 교육 연락처: (212) 232-0966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신청서는 조기 교육 센터(Head Start Centers)에 준비되어있습니다. 센터 목록과 연락처에 대한 정보는 웹 사이트 http://gis.nyc.gov/doitt/cm/CityMap.htm 또는 http://www.nyc.gov/html/acs/downloads/pdf/headstart_directory.pdf 에 나와있습니다.

¹⁶ACS 바우처는 ACS 기금이 지원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통해 차일드케어 서비스를 받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받으려면 무척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ACS 기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은 바우처가 요구되지 않으며 즉시 자리가 날 수 있습니다.

¹⁷다른 부모에 연락하는 것이 귀하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를 요청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유니버설 프리킨더 (UPK)

프리킨더는 어린이의 초기 교육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체류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니버설 프리킨더(UPK)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누구든지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어린이가 4살이 되어야 함.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chools.nyc.gov/ChoicesEnrollment/PreK/default.htm (아랍어, 방골어, 중국어, 아이티 프랑스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및 우르두어) • 교육부 유년기 교육 사무실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12) 374-0351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chools.nyc.gov/ChoicesEnrollment/PreK/default.htm (아랍어, 방골어, 중국어, 아이티 프랑스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및 우르두어) • 공립 초등학교 연락처 http://schools.nyc.gov/NR/rdonlyres/C62FB97C-C0A0-4821-BD9C-4B074184A784/45880/PSDirectory102008.pdf • UPK 비영리 그룹 어디든지 연락 하십시오. http://schools.nyc.gov/NR/rdonlyres/C62FB97C-C0A0-4821-BD9C-4B074184A784/45881/CBODirectory102008.pdf

방과 후 시간 (OST)

OST는 어린이에게 방과 후, 공휴일 및 여름방학 동안 교육 및 기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체류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 방과후 (OST)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누구든지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세에서 21세 사이의 어린이여야 함. • 가정 소득은 문제되지 않음.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nyc.gov/html/dycd/html/afterschool/out_of_school_time.shtml (영어) • http://www.nyc.gov/html/dycd/downloads/pdf/services-ost-parents-guide-en.pdf (영어) • http://www.nyc.gov/html/dycd/downloads/pdf/services-ost-parents-guide-es.pdf (스페인어) • http://www.nyc.gov/html/dycd/downloads/pdf/services-ost-parents-guide-ko.pdf (한국어) • http://www.nyc.gov/html/dycd/downloads/pdf/services-ost-parents-guide-ar.pdf (아랍어) • http://www.nyc.gov/html/dycd/downloads/pdf/services-ost-parents-guide-ru.pdf (러시아어) • http://www.nyc.gov/html/dycd/downloads/pdf/services-ost-parents-guide-hc.pdf (아이티 프랑스어) • http://www.nyc.gov/html/dycd/downloads/pdf/services-ost-parents-guide-zht.pdf (중국어) • 청소년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Youth and Community Development): (212) 788-5647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신청서는 OST 센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센터 위치 및 연락처는 http://www.nyc.gov/html/dycd/html/afterschool/search.shtml?program=Out%20of%20School%20Time 에 나와있습니다.



건강보험 프로그램

소기업 고용주, 개인회사 및 노동자를 위한 건강한 뉴욕 (Healthy NY)

건강한 뉴욕 (Healthy NY)은 소기업의 고용주, 직원, 그들의 가족 및 노동자를 위한 저가 건강보험입니다. 건강한 뉴욕 (Healthy NY) 프로그램은 월별 수수료가 다른 몇가지 HMO 보험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건강한 뉴욕 프로그램을 수혜할 자격이 있다면 귀하의 가족은 차일드헬스 플러스 보험을 수혜할 자격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노동자	개인회사 ¹⁸	소기업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자격있는 이민자, PRUCOL(U 비자 소지자 포함), 서류미비 이민자	체류 신분은 요건 사항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음. ¹⁹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주에 거주해야 함 •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가 일하고 있거나 또는 지난 12개월간 일했던 적이 있어야 함. • 정부가 후원하는 공공 건강 보험을 신청 전 12 개월간 받고 있지 않았거나 또는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건강보험을 상실한 경우라야 함. • 종사하고 있는 업체의 고용주가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야 함. • 가정 소득이 정해진 액수를 초과하지 않으며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없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주 거주자에 한함 •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가 일하고 있거나 또는 지난 12개월간 일했던 적이 있어야 함. • 신청 전 12 개월간 건강 보험이 없었어야 함. • 가정 소득이 정해진 액수를 초과하지 않으며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없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가 반드시 뉴욕주에 존재해야 함. • 직원 수가 1-50명까지라야 함. • 직원들에게 지난 12개월간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한함. • 직원 중 최소30%는 소득이 정해진 액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최소한 풀타임 직원의 건강보험료 50%를 매달 지불하고 매주 20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득이 정해진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직원에게 건강한 뉴욕 (Healthy NY) 보험을 제공해야 함. • 최소한 직원의 절반을 건강한 뉴욕 (Healthy NY)에 가입시키거나 다른 보험회사의 건강보험을 제공할 것을 반드시 보장해야 함. • 건강한 뉴욕에 가입한 종업원 중 최소 한명은 소득이 정해진 액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ins.state.ny.us/website2/hny/english/hny.htm (영어) • http://www.ins.state.ny.us/website2/hny/spanish/hnys.htm (스페인어) • (866) HEALTHY (432-5849)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ins.state.ny.us/website2/hny/english/hnystapp.htm (영어) • http://www.ins.state.ny.us/website2/hny/spanish/hnysstap.htm (스페인어) 		

¹⁸개인회사는 소유주와 직원인 동일인물이며 한사람 밖에 없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¹⁹이 프로그램은 수혜 요건으로 구체적인 체류 신분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서류미비 이민자가 상기 두 카테고리내 속할 가망성은 거의 없습니다.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이드 초과 소득

(메디케이드 스탠다다운 프로그램 혹은 메디케이드 초과소득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이드 초과 소득프로그램 은 저소득층 및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을 구매할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귀하가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없다면 메디케이드 초과 소득 프로그램에 대해선 수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차 진료가가 귀하의 진료를 맡게되며 전문의를 볼 필요가 생길 경우엔 전문의에게 보내드립니다.

뉴욕주 거주자로 소득이 정해진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임신부는 체류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메디케어 수혜에 요구되는 체류신분을 귀하가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응급 치료비를 지불하는 비상 메디케이드(Emergency Medicaid) 수혜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²⁰

	메디케이드(Medicaid)	메디케이드 초과 소득(Medicaid Excess Income)
혜택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성인을 위한 무료 보험 보험자 부담금 (co-payments)이 없음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 3개월간의 건강 관리 비용을 지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소득이 정해진 액수를 초과하고 또한 아래의 메디케이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위한 메디케이드 혜택.²¹ 메디케이드 한계액을 초과한 액수는 귀하가 지불해야 하며 메디케이드는 그 나머지를 지불하게 됨.²²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자격있는 이민자 PRUCOL (U 비자 소지자 포함)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4세 이어야 함²³ 뉴욕주 거주자 이어야 함 가정 소득이 정해진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됨. 재산이 정해진 액수를 초과 해서는 안됨. 임신부는 예외임.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고 면접 인터뷰를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하가 사무실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보내도 무관함. 대리인을 보낼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음. SSI 나 현금 보조 (Cash Assistance) 수혜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주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중 하나에 반드시 속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 세 이상 장애자 시각 장애인 21세 미만의 자녀 21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외부모 뉴욕주 거주자 이어야 함. 가정소득이 정해진 액수를 초과 해서는 안됨. 재산이 정해진 액수를 초과 해서는 안됨. 임신부는 예외임.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고 면접 인터뷰를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이 사무실을 방문할 수 없을 경우에는대리인을 보내도 무관함. 대리인을 보낼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음.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www.nyc.gov/html/hia/html/public_insurance/adults.shtml HRA 인포라인(InfoLine): (877) 472-8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www.nyc.gov/html/hia/html/public_insurance/excess.shtml?__o3rpu=IHSS_S054_programsPagePage.do%3FsequenceNumber%3D4 HRA 인포라인(InfoLine): (877) 472-8411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http://www.health.state.ny.us/nysdoh/fhplus/application.htm (영어와 스페인어)	
사무실 위치: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 목록은 http://www.nyc.gov/html/hia/html/public_insurance/enroll.shtml 나와 있습니다.	

²⁰제공된 치료가 응급 치료였음이 환자의 의사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²¹먼저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의 소득이 메디케이드 수혜가 가능한 소득 한계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귀하가 초과소득이 있는 메디케이드를 수혜할 자격이 있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매월 귀하의 치료비가 초과소득보다 많아야 하며 메디케이드는 귀하의 초과소득을 초과한 치료비를 모두 지불하게됩니다.

²²혜택을 유지하려면 매달 귀하가 지불해야 합니다. 치료비가 없는 달 또는 초과소득을 이 프로그램에 보내지 않는 달에는 귀하는 보험이 없습니다.

²³65세 이상의 노령자에게도 제공됩니다.

가족 건강 플러스 (Family Health Plus)

가족 건강 플러스는 성인을 위해 공공 건강 보험을 제공합니다. 일차 진료가가 귀하의 진료를 맡게되며 전문의를 볼 필요가 생길 경우엔 전문의에게 보내 드립니다. 보험자 부담금 (Co-payments)²⁴ 은 의사에게 직접 지불합니다. 귀하의 소득으로 인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없다면 가족 건강 플러스는 수혜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건강 플러스 (Family Health Plus)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자격있는 이민자 및 PRUCOL (U비자 소유자 포함)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4세 이어야 함. • 건강 보험이 없어야 함. • 가정 소득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뉴욕주에 거주해야 함. • 재산의 가치가 정해진 금액을 초과 해서는 안됨. •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고 면접 인터뷰를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사무실을 방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을 보내도 무관함. - 대리인을 보낼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음.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health.state.ny.us/nysdoh/fhplus/what_is_fhp.htm • http://www.nyc.gov/html/hia/html/public_insurance/adults.shtml • HRA 인포라인(InfoLine): (877) 472-8411 • 뉴욕주 가족 건강 플러스 정보 전화(New York State Family Health Plus Information Line): (877) 934-7587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http://www.health.state.ny.us/nysdoh/fhplus/application.htm (영어와 스페인어)
사무실 위치: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 목록은 http://www.nyc.gov/html/hia/html/public_insurance/enroll.shtml 에 나와 있습니다.

²⁴어떤 환자들은 또는 어떤 의료 서비스는 보험자 부담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일드 헬스 플러스 (어린이 메디케이드/차일드 헬스 플러스A 및 차일드 헬스 플러스B)

차일드 헬스 플러스 (Child Health Plus)는 보험이 없는 어린이를 위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건강보험을 제공합니다.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은 차일드 헬스 플러스 A로도 불리는 어린이용 메디케이드 (Children's Medicaid)와 차일드 헬스 플러스 B, 두 종류가 있습니다. 차일드 헬스 플러스 B는 어린이 메디케이드를 수혜하기엔 소득이 너무 높은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것입니다. 일차 진료가가 귀하 자녀의 진료를 맡게되며 전문의를 볼 필요가 생길 경우엔 전문의에게 보내줍니다. 귀하의 자녀가 차일드 헬스 플러스 수혜 자격이 있다면 아마도 건강한 뉴욕 (Healthy NY) 보험도 수혜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메디케이드/차일드 헬스 플러스 (Children's Medicaid/Child Health Plus A)	차일드 헬스 플러스 B (Child Health Plus B)
혜택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자 부담금 또는 공제액 없음. • 정신병원 치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자부담금 또는 공제액 없음 • 가정 소득에 따라서 적은 수수료(\$9 - \$45)를 매달 지불해야 할 수도 있음. • 정신병원 치료는 포함되지 않음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자격있는 어린이 이민자 및 PRUCOL (U비자 소유자)	소득 또는 체류 신분 때문에 어린이 메디케이드 (Children's Medicaid) 수혜자격이 없는 어린이는 누구든지.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하의 어린이여야 함. • 뉴욕주에 거주해야 함. • 가정 소득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재산에 적용되는 한계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하의 어린이여야 함. • 뉴욕주에 거주해야 함. • 가정 소득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차일드 헬스 플러스 A 의 정해진 금액보다는 많음) • 재산에 적용되는 한계가 없음.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health.state.ny.us/nysdoh/chplus/what_is_chp.htm • http://www.nyc.gov/html/hia/html/public_insurance/children.shtml • 차일드 헬스 플러스 핫라인(Child Health Plus Hotline): (800) 698-4543 • HRA 인포라인(InfoLine): (877) 472-8411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하의 어린이만을 위하여 보험이 필요한 경우, 다음 중 한가지 신청서를 선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성장 (Growing Up Healthy) 신청서 http://www.nyhealth.gov/nysdoh/chplus/growing_up_healthy_application.htm (영어) - 뉴욕 건강 보험 사용 (Access NY Health Care) 신청서 http://www.health.state.ny.us/nysdoh/chplus/access_ny_application.htm (영어와 스페인어) •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본인 또는 19세 이상인 다른 성인을 위해 건강 보험이 필요할 경우에는 뉴욕 건강 보험 사용 (Access NY Health Care) 신청서만 사용해야 함. • http://www.health.state.ny.us/nysdoh/chplus/access_ny_application.htm (영어 및 스페인어) 	
사무실 위치: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 목록은 http://www.health.state.ny.us/nysdoh/chplus/where_do_i_apply.htm 에 나와 있습니다.	

산전관리 보조 프로그램 (Prenatal Care Assistance Program이하 “PCAP”)

임신부들은 PCAP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과 임신 기간 중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 후 최소 2개월 까지 임신과 관련된 검사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신생아에겐 출생 후 최소 1년간 보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체류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전관리 보조 프로그램(PCAP)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누구든지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중 이어야 함. • 뉴욕주에 거주해야 함. • 가정 소득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nyc.gov/html/hia/html/public_insurance/pregnant.shtml • 건강한 성장 (Growing Up Healthy) 핫라인: (800) 522-5006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http://www.health.state.ny.us/nysdoh/chplus/access_ny_application.htm (영어 및 스페인어)
사무실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 목록은 http://www.nyc.gov/html/hia/html/public_insurance/enroll.shtml에 나와있습니다. • PCAP사무실 위치와 연락처 목록은 http://www.health.state.ny.us/nysdoh/perinatal/en/pcapmap.htm에 나와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 및 B)

메디케어는 노령자 및 특정한 장애 또는 신부전증이 있는 사람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²⁵ 파트 A (병원 보험)와 파트 B (의료 보험),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파트 A 나 파트 B 그 어떤것도 100% 보험 혜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 (병원 보험)	메디케어 파트 B (의료 보험)
혜택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간호시설, 병원, 호스피스에서 제공되는 입원 치료 및 홈 헬스케어등이 혜택에 포함됨. • 65세가 될때 파트 (Part) A가 제공됨. • 메디케어 세금을 충분히 납부한 대부분의 사람은 파트 A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환자 치료, 의사 서비스, 예방 서비스, 물리치료 및 홈 헬스케어 등 치료에 요구되는 서비스와 의약품이 혜택에 포함됨. • 등록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있음. • 가정 소득에 따라, 월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음.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²⁶	자격있는 이민자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²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가 충분한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경우 • 반드시 다음 중 하나에 속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 - 신부전증으로 인해 이식 또는 투석이 필요한 경우 • 재산에 적용되는 한계가 없음.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medicare.gov • http://www.medicare.gov/MedicareEligibility/home.asp?dest=NAV%7CHome%7CGeneralEnrollment&version=default&browser=IE%7C6%7CWinXP&language=English • http://www.medicare.gov/Spanish/Overview.asp (스페인어) • 메디케어: (800) MEDICARE (633-4227) • 소셜시큐리티: (800) 772-1213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하가 이미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가 되는 달에 메디케어 파트 A 및 파트 B에 자동적으로 등록됨 • 귀하가 65세에 가까워 지지만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를 아직 수혜하고 있지 않다든지 또는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제외한 메디케어 혜택을 수혜하기 원할 경우에는 65세가 되기 3개월 전에 신청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으로 www.socialsecurity.gov 에서 신청하거나 또는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사무실 위치:	소셜시큐리티 사무실 위치는 https://secure.ssa.gov/apps6z/FOL0/fo001.jsp 를 방문하십시오.	

²⁵메디케어엔 파트 C와 파트 D, 두 파트가 더 있습니다. 파트 C와 파트 D는 공공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정보를 원하시면 (800) MEDICARE로 연락하십시오.

²⁶귀하가 신부전증 말기 프로그램 (End Stage Renal Disease)에 들어 있으며 메디케어 세금을 충분히 납부한 시민자 혹은 자격있는 이민자의 서류미비자 배우자이거나 자녀일 경우에는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²⁷이같은 모든 요건을 전부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귀하가 5년간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한 65세 이상의 시민 혹은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민자일 경우에는 메디케어를 수혜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파트 A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 전 5년 동안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어야 합니다.

노령자 의약품 보험 혜택 (EPIC) 프로그램

EPIC는 노령자의 처방약 값 지불을 돕는 처방약품 플랜입니다. EPIC는 처방약품 플랜인 Medicare Part D²⁸ 등의 다른 처방약품 혜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약값을 줄여줍니다. 메디케이드의 전 혜택을 수혜하는 시니어는 EPIC를 받을 수 없습니다.

	EPIC 수수료 플랜	EPIC 공제 플랜
혜택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소득에 따라 연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매번 처방약을 찾을때마다 보험자 부담금 (\$3 - \$20)을 반드시 지불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수수료가 없음 • 공제액 (가정 소득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정해진 금액) 에 도달할 때까지 처방약의 시중 가격을 지불해야 함. • 공제액이 지불된 후에는 보험자 부담금(\$3 - \$20)을 지불해야 함.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있는사람은 자격이 있음.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이어야 함. • 뉴욕주에 거주해야 함. • Medicare Part D 처방 약품 플랜 가입자라야 함. • 독신인 고령자에게 허용되는 소득은 최고 \$20,000까지, 부부일 경우에는 최고 \$26,000 까지 허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이어야 함. • 뉴욕주에 거주해야 함. • Medicare Part D 처방 약품 플랜 함. • 독신인 고령자에게 허용되는 소득은 \$20,001 부터 \$35,000까지, 부부일 경우에는 \$26,001 부터 \$50,000 까지 허용됨.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health.state.ny.us/health_care/epic/index.htm • EPIC 핫라인: (800) 332-3742 (여러나라의 언어로 제공됨.)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health.state.ny.us/health_care/epic/application_contact.htm (영어와 스페인어) 	

²⁸Medicare Part D는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처방 약품 플랜이며 공공혜택이 아닙니다.



건강 관리 서비스

간호사와 가족 파트너십 (Nurse Family Partnership)

간호사와 가족 파트너십은 첫 아기를 임신한 여성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임신초기부터 유아가 2살이 될때까지 간호사가 처음으로 어머니가 되는 이들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체류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호사와 가족 파트너십(Nurse Family Partnership)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누구든지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아이를 임신한지 28주 이내이어야 함. • 가정 소득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연령 제한 없음.
추가 정보:	http://www.nyc.gov/html/doh/html/ms/ms-nfp.shtml?__o3rpu=IHSS_S054_programsPagePage.do%3FsequenceNumber%3D4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신청서는 간호사와 가족 파트너십 (Nurse Family Partnership)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음. (아래참조)
연락처에 관한 사항과 사무실 위치: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에 관한 정보는 http://www.nyc.gov/html/doh/downloads/pdf/csi/nfp-map.pdf 에 나와있습니다.

가족 계획 혜택 프로그램 (FPBP)

FPBP는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가족 계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서비스엔 피임, 비상 피임, 성병 및 HIV 테스트, 남녀 불임 수술, 임신전 상담 및 기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가족 계획 혜택 프로그램 (FPBP)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자격있는 이민자 및 PRUCOL (U비자 소유자 포함)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가능한 나이의 남녀에 한함. (64세까지) • 뉴욕주에 거주해야 함. • 가정 소득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신청하고 면접 인터뷰를 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사무실을 방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을 보내도 무관함. - 대리인을 보낼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음.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nyc.gov/html/hia/html/public_insurance/family.shtml • http://www.health.state.ny.us/health_care/medicaid/program/longterm/familyplanbenprog.htm • HRA: (718) 557-1399 또는 HRA 인포라인(InfoLine): (877) 472-8411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신청서는 여러곳에 준비되어 있음. (아래참조)
연락처에 관한 사항과 사무실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에 관한 정보는 http://www.nyc.gov/html/hia/html/public_insurance/enroll.shtml 에 나와있습니다. • 가족 계획 프로그램 제공자를 찾으려면 (800) 541-2831 로 연락하거나또는 http://www.nyc.gov/html/hia/downloads/pdf/fpbp_approved_providers.pdf 를 방문하십시오.



주택 프로그램

장애자 렌트 인상 면제 (Disability Rent Increase Exemption, DRIE)

DRIE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자가 렌트비 인상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렌트비가 오를 때 집주인에게 추가 금액이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은 시로부터 세금 공제를 받게됩니다.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렌트비 인상 120일 이내에 신청하십시오.

장애자 렌트 인상 면제 (DRIE)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있는 이민자 및 PRUCOL (U비자 소유자 포함)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되는 아파트를 임대해야 함(공공 주택이나 섹션 8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수혜 자격이 없음.) • 아파트 임대 계약서에 가장으로 지명된 장애자 성인 또는 임대 계약서에 지명된 임차인의 배우자이거나 동거자인 성인 장애자이어야 함. • 주 또는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자와 관련된 현금 보조나 메디케이드 수혜자 이어야 함. • 가정 소득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가정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불하고 있어야 함.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nyc.gov/html/dof/html/property/property_tax_reduc_drie.shtml?__o3rpu=IHSS_S054_programsPagePage.do%3FsequenceNumber%3D4 • 장애자를 위한 시장 사무실 전화 번호: (212) 788-2830.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화번호: (212) 788-2838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nyc.gov/html/dof/html/pdf/08pdf/drie_instructions.pdf

시니어 시티즌 렌트 인상 면제 (Senior Citizen Homeowner's Exemption, SCRIE)

SCRIE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렌트비 인상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렌트비가 오를때 주인에게 추가 금액이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시로부터 세금 공제를 받게됩니다.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렌트비 인상 90일 이내에 신청하십시오.

시니어 시티즌 렌트 인크리스 익셈션 (SCRIE)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자격있는 이민자 및 PRUCOL (U비자 소유자 포함)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62세의 가장이어야 함. • 임대료-통제, 임대료-안정화된 아파트, Mitchell-Lama 아파트²⁹, 또는 임대료-규제 호텔 방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아파트나 호텔 방이 본인의 거주지라야 함. • 가족 소득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가족소득의 30%이상을 렌트로 지불하고 있어야 함. • 재산 가치에 적용되는 한계가 없음.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nyc.gov/html/dfta/html/scrie/scrie.shtml#links (영어) • http://www.nyc.gov/html/dfta/html/scrie_ch/scrie_ch.shtml (중국어) • http://www.nyc.gov/html/dfta/html/scrie_ru/scrie_ru.shtml (러시아어) • http://www.nyc.gov/html/dfta/html/scrie_sp/scrie_sp.shtml (스페인어) • 노령자를 위한 뉴욕시 부서 (Department for the Aging): (212) 442-9366 • Mitchell-Lama 임차인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nyc.gov/html/hpd/html/tenants/scrie.shtml - 뉴욕시 하우징 보존 및 개발 부서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212) 863-8494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nyc.gov/html/dfta/downloads/pdf/scrie.pdf (영어) • Mitchell-Lama 임차인에 한함: http://www.nyc.gov/html/hpd/downloads/pdf/scrie-app.pdf

시니어 시티즌 주택 소유자 면제(Senior Citizen Homeowner's Exemption, SCHE)

SCHE는 주택 및 아파트를 소유하는 자격있는 고령자에게 재산세를 인하해줍니다. 이 면세를 통해 주택 소유자의 추정된 주택 가치가 5%에서 50%까지 감소되기 때문에 재산세액이 감소됩니다. SCHE를 수혜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는 자동적으로 향상된 STAR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됩니다. 신청서는 3월 17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시니어 시티즌 주택 소유자 면제(SCHE)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자격있는 이민자 및 PRUCOL (U비자 소유자 포함)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65세 이상 이어야 함³⁰ • 최소 일년긴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했어야 함. • 소유하는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가정소득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재산 가치에 적용되는 한계가 없음.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home2.nyc.gov/html/dof/html/property/property_tax_reduc_individual.shtml?__o3rpu=IHSS_S054_programsPagePage.do%3FsequenceNumber%3D4#sche • 뉴욕시 재정 재산세액 고객 보조부(Department of Finance Property Tax Customer Assistance): (212) 504-4080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home2.nyc.gov/html/dof/html/property/property_tax_reduc_individual.shtml?__o3rpu=IHSS_S054_programsPagePage.do%3FsequenceNumber%3D4#forms (영어, 중국어, 크리올어, 한국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²⁹Mitchell-Lama 아파트는 중소득층 가족을 위한 아파트입니다.

³⁰부부가 공동 소유자인 경우에는 단지 한 사람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개인들이 공동 소유자인 경우에는 소유주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향군인, 자격있는 재향군인의 배우자 또는 미망인이나 홀아비는 65세 미만일 경우에도 SCHE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세 면제 (School Tax Relief, STAR)

STAR는 주택 및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세를 인하해 줍니다. STAR엔 베이직 STAR 와 향상된 STAR 두 두 종류가 있습니다. SCHE를 수혜하는 주택소유자는 자동적으로 향상된 STAR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됩니다. 신청서는 3월 17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베이직 STAR	향상된 STAR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자격있는 이민자 및 PRUCOL (U비자 소유자 포함)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아파트가 본인의 소유이어야 함. 재산 가치에 적용되는 한계가 없음. 연령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아파트가 본인의 소유이어야 함. 최소 65세 이어야 함 거정 소득이 정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재산 가치에 적용되는 한계가 없음.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home2.nyc.gov/html/dof/html/pdf/07pdf/faq-star-06-20-07.pdf http://home2.nyc.gov/html/dof/html/property/property_tax_reduc_individual.shtml?__o3rpu=IHSS_S054_programsPagePage.do%3FsequenceNumber%3D4#star 뉴욕시 재정 재산세 고객 보조부(Department of Finance Property Tax Customer Assistance): (212) 504-4080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http://home2.nyc.gov/html/dof/html/property/property_tax_reduc_individual.shtml?__o3rpu=IHSS_S054_programsPagePage.do%3FsequenceNumber%3D4#forms (영어, 중국어, 크리올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장애인 주택 소유자 면제 (Disabled Homeowner's Exemption, DHE)

DHS를 통해 주택 소유자의 추정된 주택 가치가 5%에서 50%까지 감소되기 때문에 재산세액이 감소됩니다. 신청서는 3월 17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택 소유자 면제(DHE)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자격있는 이민자 및 PRUCOL (U비자 소유자 포함)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아파트가 본인의 소유이어야 함.³¹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자이어야 함. 장애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가정 소득이나 재산 가치에 적용되는 한계가 없음.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home2.nyc.gov/html/dof/html/property/property_tax_reduc_individual.shtml?__o3rpu=IHSS_S054_programsPagePage.do%3FsequenceNumber%3D4#dhe 뉴욕시 재정 재산세 고객 보조부(Department of Finance Property Tax Customer Assistance): (212) 504-4080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http://home2.nyc.gov/html/dof/html/property/property_tax_reduc_individual.shtml?__o3rpu=IHSS_S054_programsPagePage.do%3FsequenceNumber%3D4#forms (영어, 중국어, 크리올어, 한국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³¹부부 혹은 남자 형제 그리고/또는 여자 형제가 소유주일 경우에는 그 중에 한명만 장애인이면 DHE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재향군인 공제 (Veteran's Exemption)

재향군인과 그들의 배우자 또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자녀의 부모는 재산세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3월 17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재향군인 공제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자격있는 이민자 및 PRUCOL (U비자 소유자 포함)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있는 재향군인 (다음 전쟁 기간중 복무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페르시아 만 분쟁 (1990년 8월 2일 시작) - 베트남 전쟁 - 한국 전쟁 - 2차대전 - 1차대전 - 자격있는 재향군인의 배우자 - 자격있는 재향군인의 미망인 또는 홀아비 - 상기에 적힌 분쟁 기간에 미군으로 복무 중 사망한 자녀의 부모 •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아파트가 본인의 소유 이어야 함. • 가정 소득이나 재산 가치에 적용되는 한계가 없음.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home2.nyc.gov/html/dof/html/property/property_tax_reduc_individual.shtml?__o3rpu=IHSS_S054_programsPagePage.do%3FsequenceNumber%3D4#veterans • 뉴욕시 재정 재산세 고객 보조부(Department of Finance Property Tax Customer Assistance): (212) 504-4080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http://home2.nyc.gov/html/dof/html/property/property_tax_reduc_individual.shtml?__o3rpu=IHSS_S054_programsPagePage.do%3FsequenceNumber%3D4#forms (영어, 중국어, 크리올어, 한국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공공 주택 (Public Housing)

뉴욕시 주택 공사 (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저가격 아파트를 갖춘 주택 단지 34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가정 소득의 30%를 렌트비의 일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척 많을 수 있습니다.

공공 주택 (Public Housing)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대부분의 자격있는 이민자 ^{32, 33}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8세 이어야 함. (시니어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최소 62세 이어야 함) • 가정 소득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함. • 모든 신청인은 면접 인터뷰를 해야 함. 사무실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뷰를 스케줄도 가능함.
추가 정보:	http://www.nyc.gov/html/nycha/html/assistance/app_for_pubhsg.shtml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신청서는 NYCHA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및 연락처 목록은 http://www.nyc.gov/html/nycha/html/assistance/borolocations.shtml 에 나와있습니다.

³²쿠바인/아이티인 입국자 또는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구타당한 배우자 및 자녀들은 주택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임시 입국이 허용되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쿠바인/아이티인일 경우에는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³³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미국 시민이거나 혹은 자격있는 이민자인 가정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격있는 사람의 수가 적은 가족일 수록 혜택도 적습니다.

섹션 8 주택 보조

섹션 8보조는 저소득 가정의 아파트 렌트비 지불에 도움을 줍니다. 귀하는 가정 소득의 30%를 렌트비의 일부로 지불해야 합니다. 귀하가 아파트를 물색해야 하며 아파트 주인이 섹션 8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현재 섹션 8 신청서는 다음 긴급 상황중 한군데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용인됩니다:

- 지방 검사에 의해 위탁됨
- ACS 가족결합 및 자립생활 프로그램(ACS Family Unification and Independent Living Programs)에 의해 위탁됨.
- 가정 폭력 피해자

현재는 이외의 섹션 8 하우스링 보조 (Section 8 Housing Assistance)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섹션 8 주택 보조	
어떤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나?	대부분의 자격있는 이민자 ³⁴
어떻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8세 이어야 함. • 가정 소득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함. • 모든 신청인은 면접 인터뷰를 해야 함. 사무실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뷰를 스케줄도 가능함.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nyc.gov/html/nycha/html/section8/section8.shtml?__o3rpu=IHSS_S054_programsPagePage.do%3FsequenceNumber%3D4 (영어) • http://www.nyc.gov/html/nycha/downloads/pdf/070213N.pdf (영어) • http://www.nyc.gov/html/nycha/downloads/pdf/070213SN.pdf (스페인어)
신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연락사항:	신청서는NYCHA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및연락처 목록은 http://www.nyc.gov/html/nycha/html/assistance/borolocations.shtml 에 나와있습니다.

³⁴상기의 설명 2 참조

혜택 신청과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들(FAQs)

내가 공공 혜택을 받게 되면 생활보호 대상자로 간주되어서 후일 영주권을 취득이 불가능해 지는것은 아닙니까?

대부분의 공공 혜택은 수혜해도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금보조를 수혜한 적이 있거나 현재 수혜 중인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서 사회보장 연금(SSDI), 현금보조 (가정 보조 (Family Assistance) 또는 안전망 보조 (Safety Net Assistance)), 또는 메디케어-장기간 시설에 거주하며 받는 치료에 한해- 수혜자일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현금 혜택(non-cash benefits)은 대개 영주권 신청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기에 기재된 공공 혜택 중 대부분의 이민자가 수혜할 자격이 있는 혜택은 안전망보조(Safety Net Assistance) 뿐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소득 한계는 얼마입니까?

각 혜택마다 허용되는 소득한계가 다릅니다. 소득한계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언제나 관련된 정부기관, 이민서비스 제공자, 또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어 자신의 수혜 자격 여부를 알아 보십시오. 대부분의 혜택은 가정 소득이 정해진 한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음과 같은 혜택은 가정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 장애보험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 연방 및 주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및 부양가족 공제(Federal and state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 할인 요금 메트로카드(Reduced Fare MetroCard)
-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 학교 급식(School Meals, 아침)
- 여름학기 급식(Summer Meals 아침 및 점심)
- 유니버설 프리킨더 (Universal Prekindergarten, UPK)
- 방과후 시간 (Out-of-School Time, OST)
- 메디케어(Medicare)
- 교육세 면제 (기본 STAR)
- 장애인 주택 소유자 공제(Disabled Homeowners' Exemption, DHE)
- 재향군인 공제(Veteran's Exemption)

직업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오. 대부분의 혜택은 직업이 없어도 무관합니다. 현금보조 및 푸드스탬프와 같은 혜택은 일단 혜택을 수혜하게 되면 정해진 시간만큼 일해야만 혜택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받게 됩니까?

혜택 액수는 가족 수, 귀하의 소득, 귀하의 재산 가치, 및 기타 요소 등 몇가지 요소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각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귀하의 혜택 액수도다른 사람의 것과 다릅니다.

혜택을 어떻게 신청합니까?

본가이드는 혜택 신청 단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혜택을 신청하려면 비영리 단체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또한(212) 669-7250로 뉴욕시 공익 옹호 사무실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혜택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거부 되었거나 또는 내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합니까?

(212) 669-7250로 뉴욕시 공익 옹호 사무실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자격 카테고리 용어 용어집

구타 당하는 이민 배우자 및 자녀(Battered immigrant spouses and children)는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인 영주자인 부모나 배우자에게 학대 당했거나 또는 아주 잔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래 참조).

망명자(Asylees) 는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입국항에서 발견된 자들로 이민법정 혹은 이민국 직원이 그들의 정치성향, 인종, 국적, 종교 또는 특정한 사회조직 멤버임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타당성있는 두려움 때문에 본국으로 되돌아 가길 원치 않는거나 혹은 갈 수 없다고 판정한 사람들입니다.

미국 시민(U.S. citizens)은 미국, 푸에르토리코, 괌, 버진 제도 또는북 마리아나에서 출생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국인으로 귀화한 사람, 시민권자인 부모로 인해 시민권을 받은 사람 또는 부모의 귀화로 인해 시민권을 받게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미국에 최소 1년간 임시 입국이 허용된 이민자 (Immigrants who were granted parole in the U.S. for at least one year)는 그들의 나라가 위험한 비상사태에 처해 있거나 또는 미국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이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임시적으로 허용된 것이며 망명자들은 미국에 더 이상 도움을 제공할 수 없거나 본국의 비상상태가 끝나게 되면 미국을 떠나야만 합니다.

미국인 (US nationals)은 사모아와 같이 미국령에서 출생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범죄 피해자 (Victims of Crime, U 비자 소유자) 는 서류미비 이민자이자 심한 육체 및 정신적 학대를 받은 범죄 (가정 폭력, 폭력, 강간) 피해자로 관계 당국이 범죄자를 기소하는데 도움을 제공하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하게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U 비자를 받게됩니다. U 비자 소지자는 자격있는 이민자가 아니며 PRUCOL 에 해당됩니다(위 참조). 전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비 이민자(Non-immigrants)는 특정한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룹에는 학생, 노동자, 관광객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범주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류 미비 이민자는(Undocumented immigrants) 합법적인 서류없이 미국에 입국 했거나 비자에 허락된 기간 이상 머문 사람들 입니다. 소수의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Amerasians) 아시아계 미국인은 1962년 1월 1일 이후부터 1976년 1월 1일 이전에 베트남에서 태어나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인 합법적인 영주권자 (아래 참조)를 의미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인 이민자(Trafficked immigrants, T 비자 소유자) 는 다른 사람이 미국으로 데려와 강제로 매춘, 노예, 또는 강제노동을 하게된 사람들 입니다. 그들은T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인 이민자는 원칙적으로 자격있는 이민자는 아니지만 법에 따라 피난민과 동일한 혜택을 모두 받습니다.

자격있는 이민자(Qualified aliens)는 몇가지 카테고리에 속하는 이민자들로 합법적인 공식 서류 소지자이며 연방, 주, 및 시의 혜택을 수혜할 자격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명단을 보려면 본 안내서 앞 부분에 있는 공공 혜택 수혜 자격 결정에 사용되는 수혜자 카테고리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추방 또는 제거가 보류된 이민자(Immigrants whose deportation or removal is being withheld)는 추방절차 중인 미국 입국자들로 그들의 인종, 종교, 국적, 정치성향 또는 특정한 사회조직의 멤버임으로 인해 추방될 경우에 해를 당할 수 있다고 이민국 판사에 의해 판정된 사람들입니다.

쿠 바인 또는 아이티인 입국자(Cuban or Haitian entrant)는 쿠바 또는 아이티 시민이며 임시 입국이 허용 되었거나(아래 참조), 또는 망명 절차를 받고 있거나(아래 참조) 또는 이민국에서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피난민(Refugees)은 그들의 인종, 종교, 국적, 정치성향 또는 특정 사회조직의 멤버임으로 인해 박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본국으로 되돌아 갈 의사가 없거나 되돌아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피난민 체류 신분은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신청하여 얻습니다.

합법적 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s (Permanent Resident Aliens or Green Card Holders)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현역군인 또는 명예 재대한 재향군인과 그들의 가족 (Lawfully residing active duty service member or honorably discharged veterans and their families)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로 현재 군 복무 중이거나 또는 과거에 복무한 적이 있는 합법적인 거주자들입니다.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Lawfully present immigrants)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자 또는 자격있는 이민자로서 그들의 비자 기한이 만기되지 않은 이민자들입니다.

PRUCOL (합법적이진 않으나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로서 국토안보부 (DHS)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보통은 그들이 혜택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거주를 허락한 사람들입니다. PRUCOL의 예로는 범죄 피해자 (U 비자 소지자)(아래참조) 미국에서 1년 미만 임시 거주가 허용된 이민자, 소송이 연기된 상태인 이민자 또는 감시명령 (Orders of Supervision)을 받은 사람 등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뉴욕주에서 주와 시의 혜택을 수혜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공익 옹호인 사무실(Office of the Public Advocate for the City of New York)은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정보를 발행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실은 정보의 완벽성, 정확성 혹은 최신 정보임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사무실에서는 2008년 9월5일자로 이 안내서에 설명된 혜택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의 혜택 관리 기관 웹사이트에 기재된 정보를 검토하고 그리고/또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할 수 있는데 까지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뉴욕시 공익 옹호자 사무실은 인쇄된 자료 사용 및 적용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또한 오류나 누락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특정한 정보를 원하시면 정부 기관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될 경우에는 비영리 단체에 연락 하십시오. 체류 신분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오류와 누락 된 사항을 발견하시면 다음 주소로 저희들에게 연락해주십시오: 1 Centre Street, 15th floor, New York, NY 10007.

